

최초점검 제도 도입(신설)

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

최초점검 도입

- ① (기 존)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 실시
- ② (개 선)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
→ **조기에 소방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량시설 보완**

최초점검 대상

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

점검자의 자격

- 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
-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



- 발 행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
-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5길17 대한빌딩 5층 502호
- 전 화 02-532-1191
- 홈페이지 www.kfma.kr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주요 개정사항 안내

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을
꼭! 알아두세요!



표준자체점검비 제도(신설)

소방시설법 제22조 제4항

1일 점검한도 축소(개정)

소방시설법 시행규칙 (별표4)

점검결과 제출 및 이행(신설)

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

표준자체점검비 제도 도입

- ① (기 존) 자체점검 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
- ② (개 선)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근거로한 **실비정액 가산방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매년 공표**하여 객관화된 점검비용 산출

표준자체점검비 공표

- ① (공표기관)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
- ② (산정방식)
 -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
- ③ (공표방법)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→ 매년 12월 예정
- ④ (시행시기) 공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

표준자체점검비 확인방법

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접속(www.kfma.kr) → [주요업무] → [표준자체점검비] 클릭!

✓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안내

표준자체점검비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실점검의 우려가 있으니 표준자체점검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점검가능 면적 축소

구분	기 존	개 정
종합점검	10,000㎡	8,000㎡
작동점검	12,000㎡	10,000㎡

※ 점검 보조인력 1명 추가 투입시 증가 면적 축소
(종합)3천㎡ → 2천㎡ (작동)3천5백㎡ → 2천5백㎡

점검가능 세대 축소

구분	기 존	개 정
종합점검	300세대	250세대
작동점검	350세대	

- ① 작동점검대상 :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%이상 실시
- ② 종합점검대상 :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%이상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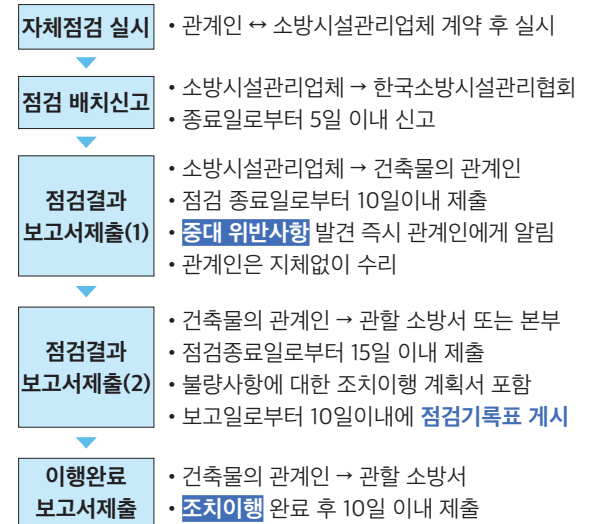
※ 점검 보조인력 1명 추가 투입시 증가 세대 축소
(종합)70세대 (작동)90세대 → (종합,작동) 60세대

☞ **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**

✓ 행정사항

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표준자체점검비 제도 신설 및 점검한도 면적이 축소됨을 알려드리니 2024년 자체점검(작동·종합점검) 예산 편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점검결과 제출 및 이행조치 절차



중대위반사항

- ① 소화펌프(펌프 외 가압송수장치 포함), 동력·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(비상전원 포함)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
- ②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
- ③ 소화배관 등이 폐쇄·차단되어 소화수(消火水)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
-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